

DBOCIO자산배분성장형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신탁계약서 변경대비표

(시행일: 2026.07.29)

변경 전	변경 후
DBOCIO 자산배분성장형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DBOCIO 자산배분성장형증권 자 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7.(생략) <u>8.(신설)</u>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7.(종전과 동일) <u>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u>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DBOCIO자산배분성장형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5.(생략) <u>6.(신설)</u> ③(생략) <u>④(신설)</u> <u>⑤(신설)</u>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DBOCIO자산배분성장형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5.(종전과 동일) <u>6. 모자형(자투자신탁)</u> ③(종전과 동일) <u>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DBOCIO자산배분성장형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u> <u>⑤집합투자업자는 제4항 각호 이외의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u>
제4조의2(해외보관대리인)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u>1. 제15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u> <u>2. 제1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u> <u>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u>	제4조의2(해외보관대리인) <u>(삭제)</u>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u>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u>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6.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하며 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9. 증권의 차입 10. (생략) ②(생략)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중전과 동일) ②(중전과 동일)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한다.
6.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략)
2.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라.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15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제15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과 동일)
2. (삭제)

자하는 행위

마.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 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삭제)

<u>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u> <u>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u> <u>5.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u> <u>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u> <u>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u> <u>8.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u> <u>9.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u>	<u>4. (삭제)</u> <u>5. (삭제)</u> <u>6. (삭제)</u> <u>7. (삭제)</u> <u>8. (삭제)</u> <u>9. (삭제)</u>
<u>제18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호 내지 <u>제5호</u>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u> <u>1.~4. (생략)</u> <u>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제1호 내지 <u>제5호</u>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u> <u>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제6호 내지 제9호, 제17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u> <u>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u> <u>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u> <u>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u> <u>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u> <u>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u> <u>③제17조제2호 가목 및 나목, 제3호 본문, 제5호 내지 제</u>	<u>제18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호 내지 <u>제2호</u>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u> <u>1.~4. (종전과 동일)</u> <u>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제1호 내지 <u>제2호</u>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u> <u>②(삭제)</u> <u>③(삭제)</u>

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7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한다)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제17조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투자방침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투자할 것

2.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투자전략을 활용할 것

3. 집합투자업자가 본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출 것

⑥제17조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u>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u> <u>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u> <u>⑦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u>	<u>⑦(삭제)</u>
<u>(신설)</u>	<u>제23조의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u>
<u>(신설)</u>	<u>제24조의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제25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③(생략)</u> <u>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u>	<u>제25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③(중전과 동일)</u> <u>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u>
<u>제26조(환매연기)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u> <u>②~⑦(생략)</u>	<u>제26조(환매연기)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u> <u>②~⑦(중전과 동일)</u>
<u>제28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생략)</u> <u>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당해 중</u>	<u>제28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중전과 동일)</u> <u>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당해 중</u>

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③(생략)	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u>[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u>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③(중전과 동일)
제33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생략)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생략)	제33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중전과 동일)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u>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u>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 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중전과 동일)
제35조(수익자총회)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u>법령(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u> 결의할 수 있다. ②~⑧(생략) ⑨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 <u>⑩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u> <u>⑪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u>	제35조(수익자총회)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u>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u> 결의할 수 있다. ②~⑧(중전과 동일) ⑨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u>및 제7항</u>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본다. <u>⑩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u> <u>⑪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u>
제40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생략) ②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8.(생략) <u>9.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u> 10.(생략) ③(생략) <u>④집합투자업자는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료를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u>	제40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중전과 동일) ②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8.(중전과 동일) <u>9. (삭제)</u> 10.(중전과 동일) ③(중전과 동일) <u>④(삭제)</u>

<u>경우 보관수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의된 기일과 방법으로 지급한다.</u> <u>⑤제2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 수수료”라 함은 다음과 같다.</u> <u>1. 건당 결제비용(transaction fee)</u> <u>2. 보관비용(safe-keeping fee)</u> <u>3. 기타 부수비용(out-of-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u>	<u>⑤(삭제)</u>
제41조(신탁계약의 변경) ①~③(생략) ④수익자<u>가</u> 제2항의 규정에 의한 <u>공시일부터</u>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⑤(생략)	제41조(신탁계약의 변경) ①~③(종전과 동일) ④수익자<u>는</u> 제2항의 규정에 의한 <u>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u>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u>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⑤(종전과 동일)
제43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③(생략) ④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u>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한 후</u>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DB글로벌자산관리EMP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⑤(생략)	제43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③(종전과 동일) ④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DB<u>뉴욕라이프</u>글로벌자산관리EMP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⑤(종전과 동일)
제48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5. (생략) ②~⑤(생략) ⑥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생략)	제48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종전과 동일)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u>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u>) 3.~5. (종전과 동일) ②~⑤(종전과 동일) ⑥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u>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u>)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종전과 동일)

⑦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⑨(생략)

⑦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을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⑨(중전과 동일)